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66	서왕진의원	2025.4.23.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2208276	김종민의원	2025.2.19.	
3		2213935	김성원의원	2025.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8.)
4		2211216	박성민의원	2025.7.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5. 9. 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5		2210300	권칠승의원	2025.5.1.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6		2211994	권칠승의원	2025.8.5.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5.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7		2213194	정진욱의원	2025.9.23.	
8		2212255	윤준병의원	2025.8.20.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에
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금지를 신설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

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나.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70조)

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라.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마.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바.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아.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

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71조제1항).

차.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7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기창업기업에”를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제1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3년이”를 각각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
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
를 “5년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

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게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제3호 중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을 “투자의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0조제5항에”를 “제70조제6항에”로 한다.

제63조의2제4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

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u>다른</u>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 ----- <u>개인투자조합 또는 다</u> <u>른</u>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u>3년</u> 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 <u>5</u> <u>년</u> 이-----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u>초기창업기업</u> 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u>다음 각 호의 창</u> <u>업기업</u> 에-----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 략)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신 설>

-----.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u>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 <u>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u> <u>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u> <u>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u>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u> <u>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u>
5. (생략) ③ · ④ (생략)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u>3년</u>의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u>5년</u> <u>의</u>----- -----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
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
문에 따른 투자 의무를 적용하
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
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의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

5년 이

5년이

② ----- 5년
이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_____

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u>경우</u>
	<u>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u>
	<u>반이 있는 경우</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	① -----5
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	년이-----
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	-----
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	-----
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
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
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	② -----5
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	년이-----
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유지	-----
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	-----
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	-----
· 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	-----
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	-----
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	-----
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

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
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략)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
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
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
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u>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 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u> <u>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 반한 경우</u> <u>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 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u> <u>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 반이 있는 경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소 등) ①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5. ~ 14.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4.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

-----.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
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
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
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
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
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게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
정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삭 제>

<삭 제>

②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 ⑦ (생략)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설>

---. -----

-----제1항에-----

-----.

③ 제1항에도-----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

5. (생략)

③ · ④ (생략)

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
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
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
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
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
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
반이 있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
소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
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
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
지 아니한 경우

5.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
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
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
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
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투자의무를 --

4. 제70조제6항에 -----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5년이-----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③ (생략)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⑤ (생략)

<신설>

<신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